



VI. 학생생활

■ 성신교정

1. 학생회 회칙
2. 장학금 지급규정

■ 성심교정

1. 총학생회 회칙
2. 학생과의활동
3. 학생상별규정
 4. 장학금
5. 학생병사안내

■ 성의교정

1. 학생준칙
2. 학생준칙 시행세칙
 3. 장학금
4. 학생병사안내
5. 의료복지제도



1 학생회 회칙

전 문(前文)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생회」는 진리·사랑·봉사라는 교육이념에 따라 사제(司祭)요, 스승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적(知的), 사목적, 영성적으로 준비된 참된 목자와 평신도(平信徒) 지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 구원(救援)과 인간의 존엄성을 전하는 보편 교회에 일익(一翼)을 담당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 회칙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자치 활동을 통한 진리 탐구와 복음화를 위한 실천적 신앙 성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會員)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재학생(在學生)으로, 대학원생(大學院生)을 제외한 학부생에게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選舉權)과 피선거권(被選舉權)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自治)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 또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6조(학교 운영에 참여) 본회는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 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학사일정의 효율적 조정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지도교수) 본회는 그 활동에 있어 필요한 자문(咨文)을 구하기 위해 지도교수를 두며, 그 직무는 교학부처장 교수의 당연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8조(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를 대표하는 최고 기구이다.

제9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1조(권한) 학생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 사업 계획 및 중요 사항을 보고 받는다.
2. 본 회의 존립(存立)이나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결권(議決權)을 갖는다.

제12조(회의) 1. (구분)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운영한다.

2. (구성정족수) 학생총회는 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의결정족수) 학생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학생회장이나 집행부의 발의 또는 회원 1/5이상의 발의로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6. (총회공고) 학생총회 소집시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임시총회 소집시는 2일 이상 공고한다.

제13조(회원 전체 투표) 본 회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事案)이 발생(發生)할 경우, 학생총회와 별도로 학생회장 또는 집행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회원 전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과반수 투표 참가와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14조(지위)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제15조(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자치 활동과 학술 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진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대표로서 본 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학생총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4. 집행부의 부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5. 본 회 회원의 중의(衆意)를 대표(代表)하여 학생 자치(自治) 활동에 관계(關係)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 결산안,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학생총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 중 본 직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8. 본 회의 회칙 개정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새로 개정된 회칙을 즉시 공포한다.
9. 집행부의 의장으로 각 부서는 물론 통학생회에 대한 회계 및 행정 감사를 할 수 있다.
10.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11. 본 회의 중대한 사항을 회원 전체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부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부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집행부에 관여한다.
2. 학생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장의 유고기간동안 그 권한(權限)과 직무(職

- 務)를 대행(代行)하며,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한 학기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
- 제17조(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유고)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모두 유고시 총무부장이 임시 대표를 맡고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當選者) 공고일 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단, 이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한 학기 이상일 경우에 한다.
- 제18조(임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해당 년 취임일(就任日)부터 익년(翌年) 이임일(移任日)까지로 한다.

제 4 장 집행부

- 제19조(지위) 집행부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20조(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을 의장으로 하며, 부학생회장, 부장, 차장 및 통학생회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 제21조(부장 및 차장) 1. (임무) 집행부의 각 부장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관장하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2. (선출) 집행부의 각 부장 및 차장의 선출은 학생회장 취임년도의 3학년 재학생 중에서 학생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 제22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총회에 업무계획(業務計劃) 및 활동계획을 보고(報告)하고 그에 따른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활동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학생총회에 제출한다.
 3. 본 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特別)기구를 설치(設置)할 수 있으며, 부서(部署)의 증설이나 폐지를 할 수 있다.
- 제23조(조직 : 집행부서의 업무) 집행부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總務)부 : 본 회의 사무·회계·운영·기획 및 조정(調定)에 관한 업무와 집행부와 자치기구의 재정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企劃)부 : 본 회의 행사 기획·운영·조정에 관한 업무와 집행부 및 자치기구의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3. 학술(學術)부 : 본 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문화(文化)부 : 본 회의 문화·예술 활동 제반 업무 및 본 회 활동의 영상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5. 편집(編輯)부 : 본 회 간행물(刊行物)의 제작·배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弘報)부 : 본 회 제반 업무에 관한 홍보와 대외(對外)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7. 체육(體育)부 : 본 회의 체육행사를 기획하며 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 과학(科學)부 : 본 회 제반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전산(電算)부 : 본 회 전산 시설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제반 업무 및 학생회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0. 통학생회 대표 : 본 회와 관련된 자치(自治)기구인 통학생회(通學生會)의 운영과 그에 따른 제반 업무 및 의견조율(意見調律)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24조(회의) 1. (구분) 집행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2. (정기 집행부회의) 정기 집행부회의는 월 2회로 한다.
 3. (임시 집행부회의) 임시 집행부회의는 학생회장이나 부학생회장 또는 2인 이상의 부장의 요구로 소

집된다.

4. (참관) 집행부 회의는 회원의 자유로운 참관(參觀)이 허락되나, 특별한 경우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 5 장 통학생회

제25조(지위) 통학생회는 학생회장 직속에 있는 전체 통학생들의 의결, 집행, 운영기구이다.

제26조(목적) 통학생(通學生)들의 원활한 학내생활을 지원하며 상호간의 유대감을 조성하여 배움과 친교의 생활을 조화시킴으로써 인간적, 그리스도인적 성숙을 도모하며 본 회를 이해와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구성) 통학생회는 고유한 특성의 구성원들을 고려해 그 산하에 여학생회와 남학생회, 수녀학생회를 둔다.

1. 여학생회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평신도(平信徒) 여학생으로 구성된다.
2. 남학생회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평신도 남학생과 수도회 소속 남학생으로 구성된다.
3. 수녀학생회는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수도회 소속 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28조(임원) 통학생회의 임원은 전체대표 1인과 총무 1인, 여학생회 회장 1인과 총무 1인, 남학생회 회장 1인과 총무 1인, 수녀학생회 회장 1인과 총무 1인, 각 학년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1. 전체대표 : 통학생회를 대표(代表)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연간 계획 및 통학생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체총무 : 통학생회의 전반적(全般的)인 실무(實務) 및 재정을 담당(擔當)하며, 각 회에서 제출한 예·결산을 취합(聚合), 관리한다.
3. 여학생회 회장 : 여학생회를 대표하고 여학생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여학생회 총무 : 여학생회의 전반적인 업무의 실무 및 재정을 담당한다.
5. 남학생회 회장 : 남학생회를 대표하고 남학생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 남학생회 총무 : 남학생회의 전반적인 업무의 실무 및 재정을 담당한다.
7. 수녀학생회 회장 : 수녀(修女)학생회를 대표하고 수녀학생 활동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수녀학생회 총무 : 수녀학생회의 전반적인 업무의 실무 및 재정을 담당한다.
9. 각 학년대표 : 각 학년을 대표하며 통학생회의 임원으로서 통학생회 회의에 참석(參席)하고 업무를 협조한다.

제30조(본 회 내에서의 업무 및 지위) 1. 전체대표, 전체총무와 통학생회 임원 1인은 집행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본 회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2. 통학생회 임원 가운데 통학생회 전체대표, 전체총무, 통학생회 임원 1인으로 통학생회 대표단(代表團) 3인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집행부(執行部)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제31조(임원선거) 1. 통학생회 산하의 여학생회 회장과 총무, 남학생회 회장과 총무와 수녀학생회 회장과 총무는 각 회의 총회(總會)에서 재적(在籍)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2. 전체대표와 전체총무는, 위에서 선출된 각 회의 회장과 총무, 각 학년대표로 구성되는 임원총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전체대표는 각 산하(傘下)회의 회장들 중에서 선출(選出)하고 전체 총무는 각 회의 총무 중에서 선출한다.

3. 학년대표는 각 학년에서 자율적(自律的)으로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자체조직(自體組織)을 둘 수 있다.
- 제32조(선거시기) 1. 임원은 학생회장 선거에 맞추어 통학생회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2. 각 학년대표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각 학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제33조(회의) 통학생회(通學生會)의 회의는 전체 총회, 임원 총회 그리고 임원회의(任員會議)와 여학생회 총회, 남학생회 총회, 수녀학생회 총회로 구분된다.
- 제34조(통학생 총회) 1. 전체 총회의 참석인원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 한다.
2. 전체 총회는 학년 초와 학년말에 2회 개최되며 그 시기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 학년 초 전체 총회에서는 해당 연도의 행사를 보고(報告)하고 학년말 전체 총회에서는 신임(新任) 임원 소개와 해당 연도의 행사 결과보고 및 회계보고(會計報告)를 포함해야 한다.
4. 특별한 경우 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해 학기 중에도 소집될 수 있다.
- 제35조(임원총회) 임원 총회는 통학생회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滿了)되었거나 임원의 탈퇴(脫退)와 재조정(再調整)의 경우에 소집되며 통상적으로 임원선거를 의미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전체대표가 필요를 인정하고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 제36조(임원회의) 1. 통학생회의 임원들로 구성된다.
2.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隨時)로 소집되며 통상적(通常的)으로 월 1회 소집한다.
- 제37조(각 산하회의 총회) 통학생회 산하의 여학생회, 남학생회, 수녀학생회의 각 총회는 각 회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임원의 탈퇴와 재조정(再調整)의 경우에 소집되며 통상적으로 선거를 의미하지만 각 회의 회장이 필요를 인정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 제38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3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3월부터 익년(翌年) 2월까지로 정하되 매학기 구분한다.
- 제40조(예산편성, 심의 및 집행) 1. 본 회의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編成)하고 회장단에서 조정하며 집행부 회의를 통해 심의 확정 의결한다.
2. 예산안 의결 이전에 불가피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집행부의 예산안 의결이 늦어질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 의결된 예산안에 가감(加減)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1조(회비) 본 회의 회비(會費)는 집행부에서 심의 확정하며, 본 회의 회원은 특별한 이유(理由)가 없는 한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회비를 납부한다.
- 제42조(결산) 1. 본 회의 회비에 대한 결산은 총무(總務)부장이 대표(代表)로 하여 총괄적(總括的)인 결산을 집행부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2. 집행부는 매학기 초 예산의 집행을 심의하여, 학생총회에 그 결산을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제 7 장 선 거

- 제43조(선거원칙) 본 회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이다.
- 제44조(선거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권(選舉權)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부생에게 주어진다.

제45조(피선거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피선거권은 본 대학 3학년 재학생에게 주어진다.

제46조(입후보 및 선출방법)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선거권(被選舉權)을 가진 자 중에서 회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 동반(同伴) 입후보한다.
2. 회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해야만 유효하다.
3. 후보자가 2조일 경우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4. 후보자가 3조 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過半數)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가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5. 단독 후보일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6.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47조(선거 시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2학기 종강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 집행부의 논의를 거쳐 다른 시기에 옮겨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職務)를 수행(修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잔여(殘餘) 임기가 한 학기 이상이면 그 사유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補闕選舉)를 실시한다. 단, 학생회장의 잔여 임기가 한 학기 미만일 경우 제 16 조 2항과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계승한다.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 1. (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년 신학원생 1명과 통학생 1명으로 구성(構成)되며, 구성된 선거관리(選舉管理)위원 중 최고(最高)학년 1인을 선거관리(選舉管理)위원장으로 임명한다.

3. (소집 및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0일 전에 학생회장이 소집하며 선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0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해 정한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51조(발의) 학생회장 또는 과반수(過半數) 이상의 집행부 구성원 또는 회원 1/5이상의 동의로 회칙 개정을 발의한다.

제52조(의결 및 공포) 본 회의 회칙 개정의 의결 및 공포는 다음과 같다.

1. 회칙(會則) 개정(改定)이 필요한 경우, 학생회장은 집행부와 함께 개정안(改正案)을 마련하여 학생총회 개최 전 5일 이내에 공고(公告)하고 개정 내용에 관하여 1회 이상의 공청회를 거쳐 심의, 의결한다.
2.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학생총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公布)해야 한다.

제 9 장 탄핵소추권

제53조(발의) 집행부 1/4 또는 본 회 회원 1/5의 동의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이 경우에 피탄핵자의 성명과 직위, 탄핵의 사유, 증거, 탄핵소추 발의자들의 서명을 담은 명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의결) 의결은 학생총회 의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5조(공포) 학생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도교수가 탄핵 의결을 즉시 공포한다.

제 10 장 부 칙

제56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3. . .)

제57조(개정일)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 3. 22.)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칙 제49조 2항에 따른다.

제2조(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선거 종료 후 자동적(自動的)으로 해산한다.

제3조(선거관리 위원의 입후보 등록) 선거관리 위원은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개의 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過半數)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거일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제6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 심사)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立候補者)에 대한 자격을 심사(審査)하고 선거일 5일전까지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투·개표 관리) 투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이 관리하며,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이 관리한다.

제8조(투·개표 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각 투표, 개표장에 참관인 1인씩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9조(무효소송) 1.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異意)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전(前) 항의 제소(提訴)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0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개표를 완료하고 바로 당선 공고를 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세칙 이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및 교외 인사나 각 장학재단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교의 장학업무와 그 지급업무는 교학부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수혜대상) 본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가정사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3. 교내 특정부서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4.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제5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에서 제외된다.

1. 복학한 자
2. 재입학한 자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6조(교내장학금의 종류와 금액) ① 교내 각종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입학장학금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일반전형과 대학수료자전형 각각 상위1명씩에게 지급한다.
2. 성적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A급(4.0)이상인 자 중에서 각 학년별 상위 3명에게 각각 지급한다. 단, 대학수료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학년에 이수해야 할 학점 30%에 미달할 경우,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하상장학금은 학업성적이 B급(3.0)이상인 일반학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한다.
4. 가족장학금은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그 중에서 저학년 학생에게 지급한다.
5. 대견장학금은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6. 학장특별장학금은 신학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7. 근로장학금은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교내 장학금의 지급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7조(교내 장학생의 선발) 교내 각종 장학생은 매학기 교무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8조(교외 장학생의 선발 추천) 교외 장학생은 국가기관, 교외인사나 외부 장학재단에서 추천 의뢰한 조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외장학금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장학금의 취소) 장학금의 수혜자가 자퇴 및 제적 처리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이중지급금지)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종목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단,

대건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부처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12조(대학원 장학금) ① 본교 출신자로서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성직자 및 수도자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등록금의 50%를 면제한다.

② 본교의 재학생(신학생 및 수도자)은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사과정에 등록할 서울교구 출신 새사제에 한하여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대학원 교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신학부총장이 허락한 자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면제한다.

제13조(유학지원장학금) ① 본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공식적인 유학생 선발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유학지원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장학금액은 유학준비비와 유학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학지역, 유학기간, 유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4. 3. 18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2년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 명칭	수혜 대상	지급액
우수입학	일반전형 수석 입학자	1학기 등록금의 2/3 (입학금 제외)
	대학수료자전형 수석 입학자	1학기 등록금의 1/3 (입학금 제외)
성적우수	학년별 성적 1등 우수자	등록금의 2/3
	학년별 성적 2등 우수자	등록금의 1/2
	학년별 성적 3등 우수자	등록금의 1/3
하 상	매학기 10명 이내	60만원
가 족	본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 (저학년의 기준은 학번, 생년월일 순)	등록금의 1/2 (입학금 제외)
대 건	교구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전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학장특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근 로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근로시간에 따름

(별표 2) 교외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명칭	추천 기준
연 강	전학기 학업성적이 B급(80점) 이상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교구 신학생
선 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교구 신학생
보 훈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자
용 기	전학기 학업성적 B급 이상자로서, 북한선교 및 중국지역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구 신학생



1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총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 건설과 가톨릭 교육이념에 입각한 사회정의 구현과 진리 탐구를 위한 실천적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에 둔다.

제4조(운영) 본회는 회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참여 아래 회칙에 의해서 운영한다.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율과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지도) 본회는 부총장 및 학생 자치활동에 관련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구성)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 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인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로 구성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9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0조(권한)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1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2조(소집)

1. 학생총회는 전체회원은 1/10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전학대회 개의 후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학생총회의 소집은 5일(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전에 그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

제14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로 칭함)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15조(구성)

1.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2.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3. 각 학부(과) 학생회장
4. 각 전공 학생회장
5. 각 학년 전공(과) 대표(단 일학년의 경우 반대표와 학부 대표 모두 대표자로 인정한다.)
6. 예·결산 심의를 받는 자치기구의 대표(단, 재적인원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7. 과(학부)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재적 대표자에서 제하고 발언권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 할 수 있다.
8.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학대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자는 재적인원에 포함된다.
9. 전학대회 안건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있는 학우는 전학대회 개의 전까지 회원 15인 이상의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그 사항에 관한 발언권을 갖게 된다.

제16조(의장)

1.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으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표한다.
2. 본 회의 진행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3. 의장 유고시 총학생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학대회 의장이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7조(소집)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 년 2회로 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제적대표자 1/3이상, 또는 중앙 운영 위원회의 1/3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전학대회의 소집은 5일(주말, 공휴일은 제외)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기능 및 권한)

1.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의 의결권이 있다.
2. 중앙 감사 위원회를 인준할 수 있다.
3.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있다
4.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이 있다
5. 학생총회의 소집 교구권(한 학기 2회)이 있다.
6. 총학생회 집행부 전 부장의 해결 의결권이 있다
7. 중앙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집행부, 단과대학생회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요구권이 있다.
8.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다.
9. 본 회 회비 및 회원들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다.
10. 학교 당국에 학칙 개정 발의를 요구할 수 있다.
11.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2.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집행부에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3. 전학대회 개의 후 재적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9조(안건상정)

1. 총학생회장, 부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은 5일(주말, 공휴일 제외)전까지 상정, 공고한다.
2. 재적대표자 1/5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1. 재적 대표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의 2/3 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 한다.
2. 총학생회장, 부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의 적용은 재적대표자 2/3 이상 출석과 참석 대표자 2/3 이상 찬성에 의해 적용 된다.
3.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학대회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총학생회

제 1 절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부회장

제21조(지위)

1. 총학생회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권위시 그 직부를 대행한다.

제22조(임기)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년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차기 총학생회는 12월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1. 집행부의 각 부장 및 차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학생회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여 중앙 위원회와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4. 결산을 편성하여 감사기구의 심의 및 감사를 받는다.
5. 학생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제 2 절 집행부

제24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5조(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하며 차장을 둘 수 있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총학생회 사업계획 보고서와 예산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결산안 보고서를 감사기구에 제출한다.
4. 총학생회는 제반활동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7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8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각 단과대학총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겸임한다. 단, 총학생회장 께위시에는 총학생회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 회비를 정하고 회칙 개정안의 발의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전체 예산과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예산을 작성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3. 결산안을 작성 감사기구에 제출한다.
4. 중앙운영위원회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31조(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와 임시중앙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당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안에서 협의를 통해 그 시기를 결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2.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중앙운영위원 1/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한다.

제32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전원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 (단,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위의 위임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2회 이상 미참석 시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확대운영위원회)

1.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학부(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는 특별 운영기구이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28조에 규정된 중앙운영위원과 각 학부(과) 학생회장,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3.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 또는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4.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34조(지위)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들의 자치기구이다.

제35조(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을 구성하는 각 학부(과)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1.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 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37조(회칙)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회 회칙에 준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칙을 갖는다.

제 7 장 동아리 연합회

제38조(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전 동아리와 동아리인의 자치기구이다.

제39조(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전동아리의 동아리인으로 한다.

제40조(동아리연합회장)

1.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2.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 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41조(회칙)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의 이익과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본 회 회칙에 준하는 범위에서 그 조직, 업무,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4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본 회 회비와 보조금으로 정한다.

제43조(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회계연도는 한 학기를 1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단 2학기 결산은 결산서를 만들어 (2학기 기말고사 전에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2곳 이상에 비치한다.)
3. 이월금의 집행과 결산에 있어 당해연도 이월금을 재정으로 하는 차기년도 사업의 경우, 차기년도 학생회에서 집행하고, 전학대회에서 그 결산 안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단 해당년도 회계연도 이월기간 내에 학생회의 이월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단위의 임시대표자가 이를 집행하고, 전학대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4조(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승인한다.
2. 본 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3. 본 회의 회비는 학교에서 징수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총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집행, 관리한다.

제45조(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1. 예산은 집행부의 각 자치기구별로 사업계획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전학대회에서 결정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전학대회에서 거부하거나 의결한다.
3. (가예산) 운영상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때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전 학기 예산에 준해 총예산의 10%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단, 차기 전학 대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경우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학대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예산의 분배)

1.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는 학생회 회원수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동아리 연합회는 전체 예산의 18.5%를 분배한다.

2. 보궐선거를 통해 구성된 학생회는 예산의 5%를 삭감한다.
 3. 구성되지 못한 학생회는 예산의 50%를 삭감한다.
 4. 각 학생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에서 구성회원의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
- 제47조(예비비) 예비비는 총 예산의 2% 이내로 하고 그 지출은 전학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8조(예산 집행) 예산 집행 시 각 기구는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9조(결산보고) 총학생회가 각 기구에서 보고 된 결산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감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0조(감사) 본 회비는 회계연도 말에 회계와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기구는 감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에는 불시에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9 장 선 거

- 제51조(선거시기) 총학생회장,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완료 1개월 전(10월-11월)에 실시한다.
- 제52조(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대마다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53조(선거권)
1. 총학생회장, 부회장의 선거권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2. 단과대 학생회장의 선거권은 단과대학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제54조(피선거권)
1. 총학생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2. 기타 각 자치기구장 입후보 자격은 각 기구 세칙에 의한다.
- 제55조(선거방법)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하되, 회원과반수 이상 참가 시 유효하다.
- 제56조(보궐선거)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총학생회 부회장이 대행한다.
- 제57조(선거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세칙에 의한다.

제 10 장 회칙개정

- 제58조(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학대회 재적 대표자 1/4이상, 중앙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본 회 회원 1/20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해당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개정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발의한다.
- 제59조(의결) 회칙개정의 발의 시 전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후에 전학대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학대회 의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 11 장 탄핵소추권

제60조(발의)

1. 전학대회 재적위원 30인 이상의 연서 또는 본 회 회원 1/10이상의 연서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 탄핵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 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전학대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에 피 탄핵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전학대회 의장이 피 탄핵자인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하여 전학대회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61조(의결) 전학대회 의장,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의 탄핵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공포) 전학대회 의장은 탄핵 의결을 즉시 공포한다.(단, 전학대회 의장이 피 탄핵자인 경우 중앙 위 중 대표를 선정해 탄핵의결을 공포한다.)

제 12 장 중앙감사위원회

제63조(지위) 중앙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학생경비를 재정으로 운용 하는 단체의 예산집행 및 결산의 감사를 관장하는 기구이다.

제64조(구성)

1. 전학대회 재적인원 중 단대별 1인과 전학대회 재적 외 인원 중 단대별 1인으로 각 단대별 2인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은 이들 중 선출한다.
2. 1학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활동하며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임할 수 없다.

제65조(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와 이하 특별자치기구, 각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등 학생회비 및 학생경비를 재정으로 하는 모든 단체의 예산 집행 및 결산에 대한 감사권이 있다.
2. 매 학기 1회의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필요시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에 자료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위 요구 시 해당 부서는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요청 3회 이상 불응 시 해당기구의 탄핵을 위한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소집 요구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3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전학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5. 감사결과에 따라 탄핵을 위한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소집 요구시 위와 동일)
6. 감사위는 감사결과를 교내 언론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결)

1.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인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2. 수시 감사는 재적인원 1/2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다.
3. 전학대회 소집은 재적인원 2/3이상 발의와 감사위 재적인원 전원참석, 참석인원 2/3이상 동의로 요구한다.

제67조(기타)

1. 전학대회 1/2이상 요구 시 감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위에 대한 감사권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갖는다.
3. 재감사 요구 시 감사위는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요구일로부터 10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재감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장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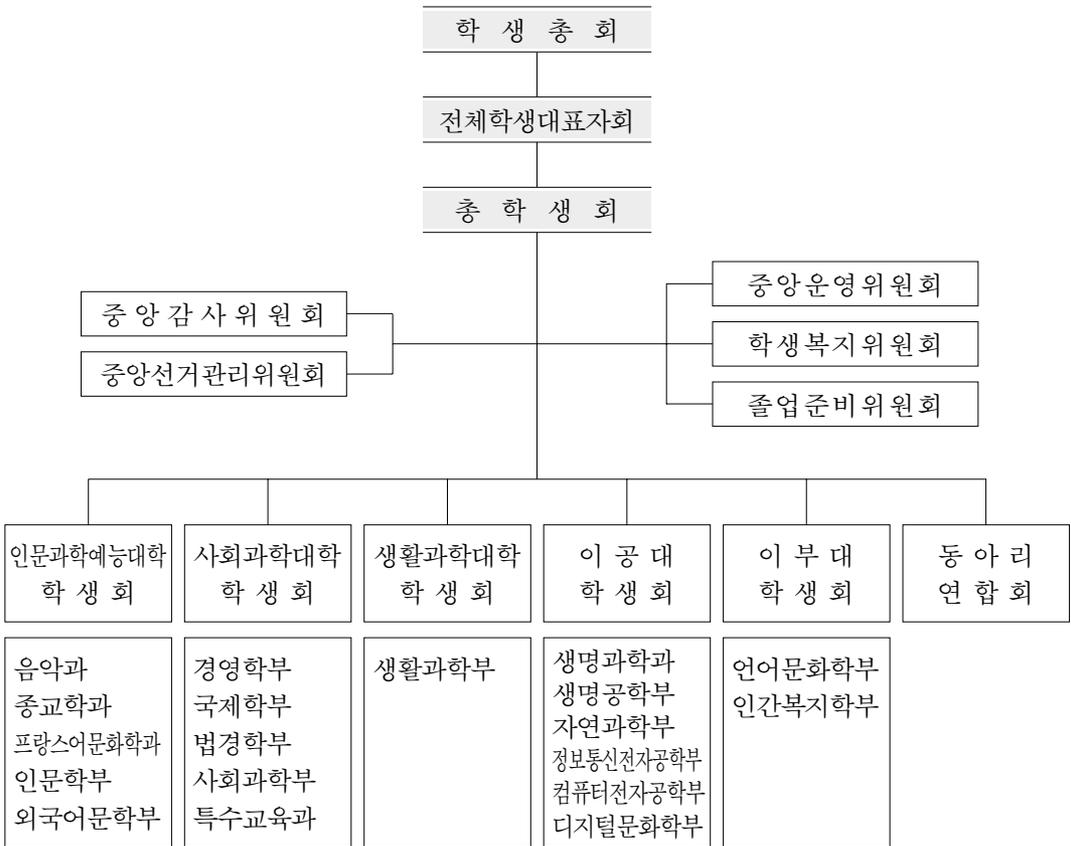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5. 11. 26)

제2조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9. 10. 11)

제3조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9. 4. 13)

제4조 제8장 제46조는 2001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성심교정 총학생회 기구표



2 학생과외활동

(1) 학생 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단체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등록요건) (1) 모든 학생단체의 조직 및 등록은 총학생회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체의 설립취지나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1)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거쳐 단체 등록기간 중 학생과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교내 학생자치단체 등록원
2. 기구편성표
3. 활동계획서
4. 지도교수 취임승락서(지도교수를 추대한 단체)
5. 서약서
6. 단체가입 회원명부
7. 회칙

(2) 기존 단체는 단체 등록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과외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1. 단체 등록신청서
2. 기구편성표
3. 활동계획서
4. 지도교수 취임승락서(지도교수를 추대한 단체)
5. 서약서
6. 단체가입 회원명부
7. 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서

제5조(승인) 단체의 승인은 등록신청을 마친 후 학생활동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총장이 한다.

제6조(임원) 임원은 그 단체의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그 명단은 3일 이내에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 (1) 회원은 단체의 신규 및 재등록시에만 모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첨부,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모집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에 한하며, 2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3) 1학년은 2학기부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재정)(1)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단체의 재정은 그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실) (1) 각 단체마다 하나의 단체실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지원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단체실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1. 대학생 본분예의 일치 및 면학분위기 조성 여부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공헌 여부
3. 행사계획의 건전성과 활동의 모범성 여부
4. 과거 2년간의 활동실적 여부
5. 단체실의 효율적인 관리 여부

(3) 단체의 성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지원 및 단체실의 배정을 취소하거나 단체실을 박탈할 수 있다.

1. 타 대학과의 연합단체로서 본 대학 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없는 단체
2. 단일학과나 동문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3. 대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건전하지 아니한 단체
4. 과거 1년간의 활동실적이 미진한 단체
5. 단체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단체
6. 활동실적보고 및 결산보고를 하지 아니한 단체
7. 기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단체

제10조(집회 및 행사) (1) 집회를 갖고자 하는 단체는 집회일 5일 전까지 행사·집회계획(신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사개최일 7일 전까지 행사개요, 예산관계, 대본 및 주제내용의 요약, 지도교수의견서(필요시)를 첨부하여 행사·집회계획(신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타 대학 또는 타 기관과의 연합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항의 첨부물 및 해당대학 지도교수와 학생지원처장 또는 해당기관 행사책임자의 연서로 된 참가동의서를 첨부하여 행사·집회계획(신청)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회 또는 행사가 수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와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수업처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학생회비의 보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을 거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학생지원처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는 부총장에게, 제3항의 경우에는 행사개최일 1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허가한다. 다만, 중간 또는 기말고사(전교생이 실시하는 시험 포함) 개시 10일 전부터 시험종료시까지의 각 단체의 집회 및 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6) 단체는 행사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비를 보조받은 행사일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유인물) (1) 단체는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티켓 등과 같은 유인물을 제작할 경우 그 초안과 계획(신청)서를 지도교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제작하여 배부하거나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

(2) 모든 게시물은 소정용지로 한정하고 그 매수도 학생지원처장이 조정한다.

제12조(간행물) (1) 단체는 모든 정기·부정기간행물을 발간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간행물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봉사활동) (1) 봉사활동은 학과 및 단체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봉사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방학시작 30일 전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총학생회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총학생회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계획서
2. 예산계획서
3. 참가학생명단

(4)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1개 단체의 단원수는 20명 이상, 봉사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봉사단체는 대학과 총학생회(총학생회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6) 단체는 봉사활동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결산서, 자체평가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격박탈) 학생지원처장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학생활동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대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건전하지 못한 활동을 할 경우
2. 본 대학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경우

제15조(해체) (1) 등록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단체는 단체등록 마감일 이후 자동해체로 간주한다.

(2)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체사유서
2.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해체동의서
3. 지도교수의견서(지도교수가 있는 단체)
4. 단체의 간판과 실 열쇠

제16조(활동의 잠정적 중지) (1) 졸업준비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등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는 업무(앨범 및 교지제작)가 끝나면 다음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활동을 중지한다.

(2) 실의 열쇠는 업무가 끝나는 즉시 학생지원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활동운영자문위원회가 심의하고 부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8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 간행물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칙 82조 및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그 편집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이 참여하며, 본 대학교 학생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간행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3조(간행물의 분류) 간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본 대학교 전체학생 대상 간행물
2. 단과대학 또는 학과 대상 간행물
3. 동아리 대상 간행물
4. 개인 대상 간행물

제4조(간행물의 발간의 허가) (1) 단체 또는 개인은 간행물을 발간할 때 다음의 서류를 지도교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 발간계획(신청)서
2. 인쇄 내역서
3. 원고
4. 예산서(개인이 발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학생지원처장은 학생활동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간행물의 발간을 허가한다.

제5조(간행물의 배포) (1) 단체 또는 개인은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에 다음의 자료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부승인원
2. 배부계획서
3. 간행물 5부

(2) 학생지원처장은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간행물의 배포를 허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시행세칙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시행세칙은 198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시행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분포



(3) 동아리의 목적과 내용

가. 봉사분과

① 로타랙트 :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지도력의 양성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육성을 꾀하는 로타리클럽과 연관된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전공분야의 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성심안에서 지역사회 봉사과 책임감을 함양시키고자 1987년 3월 25일에 설립된 동아리이다. 봉사를 근본목적으로 하여 크게는 국제이해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활동하는 모임이다.

② 사랑살기 : 1975년에 창립되어 순수한 지역봉사를 통해 선후배 회원들간의 우애와 친목을 도모하여 대학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한 모임이다. 주요행사로는 매주 정기적으로 교아원인 '새소망소년의 집'을 방문하여 원아들에게 학습지도, 생활지도와 놀이를 하며 사랑을 나눠준다.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아방지를 위해 '어린이날 이름표 달아주기'를 실시하며 7월에는 농촌 봉사활동과 매학기 M.T.를 실시한다.

매월 1회 월보와 매년 1회 회지 『한마음』을 발간하고 있으며 매주 정기모임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회원들간에 대화를 통해 지식과 인격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③ 작은사랑회 : 수화동아리로서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학술분과

① 호우회 : 1978년 6월에 창립되었으며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모임으로 친목, 봉사, 학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활동내용으로는 학술세미나, 독서토론회, 축제기간 중 상품판매, 국군장병 위문카드, 하계봉사, 국군묘지현화, 회지발간 등이 있다.

② HAM : HAM이란 아마추어무선을 통하여 무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하는 모임이며, 과학적인 취미 활동으로 적법한 기준의 무선설비를 갖추어 놓고, 같은 취미를 가진 세계인들과 전신 혹은 음성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통신을 함으로써, 실험 및 연구등을 개척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③ A. L. A. (AFKN Listening Association) : 명칭에서 말하고 있듯이 AFKN 방송청취를 통하여 영어 청취력과 아울러 회화력 향상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1979년에 창립된 본회는 전국대학 A.L.A. 연합회에 가입되어 교내활동은 물론 대외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대학생 '영어청취력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평소에 연마한 실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특히 A.L.A.는 외국인 지도교수를 모시고 일상생활의 대화시간을 자주 가지며 지난 해부터 우리 대학의 전통행사인 'English Speech Contest'를 본회에서 주관하며 학년초에 신입생을 위한 원어연극 공연을 통하여 영어의 생활화를 꾀하고 있다. 학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회원간의 친목과 선후배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간담회, M.T., L.T. 등을 유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④ K. U. S. A. (Korea Unesco Student Association)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산하단체로 1968년에 창립되어 새물결운동으로 캠퍼스 내의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학술적·봉사적 성격을 띄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축제시 학술발표 및 판매활동을 하여 독서토론회와 이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실천활동으로 봉사활동이 있다.

⑤ MIDAS : 2003년에 창설되어 벤처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벤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⑥ 골든크로스(GOLEN CROSS) : 99년 10월에 창립하여 주식에 전반적인 이해와 증권투자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학습 및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⑦ 문학연구회 : 학술연구 성격을 띤 동아리로서 전반적인 문학연구를 통해 국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회원간의 돈독한 인간관계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행사로는 축제기간 중 서적전시 및 서적판매로 학내 학풍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여행과 답사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문학답사를 실시하며 2학기 학술제에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경험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는 학년별 주 1회 강독과 연 2회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문연』이라는 회지에 실어 한 해의 공부를 마무리짓는다.

⑧ CINEPHILE : 영화관람·토론·세미나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영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함양을 유도하며 나아가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생활 공간확보에 취지를 둔다.

다. 공연예술분과

① 실험 : Soft Rock, 대중적인 재즈, R&B 등의 폭넓은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로서 교내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보다 전문적인 연주와 그 전수를 목적으로 한다.

② 무천 : 노래에 담긴 뜻을 몸짓으로 표현,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몸짓패로서 대학생들의 건전한 문예 문화 정착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가현회(클래식기타반) : 기타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감정을 선율로써 표현하고 또한 학우애와 인격을 함양하여 클래식 기타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으로는 매년 신입생활영연주회와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동안 닦은 실력을 발표하여 회원상호간의 격려와 학우들의 조연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기한다. 또한 기타의 올바른 주법과 이해를 위해 하계·동계 M.T.를 실시하며 전국 대학생 기타연합회 회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여 본 대학의 대외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④ CDZ(Catholic Univ. Dancing Zone) : '춤 음악'이라는 예술 장르를 대중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함께 연구,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한울림 : 1985년 3월에 발족한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으로서 음악의 기초이론과 실습을 통해 음악적 소양을 넓히고 건전한 노래 보급과 함께 동아리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⑥ FOM(freedom of mouth) : freedom of mouth의 약자 그대로 입으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랩과 R&B등 흑인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⑦ 민요반민맥 : 1983년 3월에 창립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부를 수 있는 민요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여 민속적인 전통을 이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1년간의 주요행사로는 축제시 민요발표회와 6월에 민요시모이기, 여름방학에 민요채집이 있으며 가을에 공연과 함께 채집된 민요를 발표한다.

⑧ 그룹사운드 SACRED : 음악의 전반적인 지식을 교환하고 합주연습과 동시에 공연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성취감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우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⑨ 극예술연구회 : 대학극을 이해하고 연마하여 대학 고유의 연극으로 발전시키며 공연활동을 통해 선 후배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며 대학극의 순수성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신입생활영공연과 추계 정기공연을 중심으로 매주 정기모임과 연극관람이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예술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연극이론을 공부하며 공연을 통해 모든 연극분야에 관한 기초수업과 연기실습을 하고 있다. 특히 1983년도에는 중앙학도호국단 추계 전국대학 연극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을 하여 대내외로 학교의 이름을 알리는데 공헌을 하였다.

⑩ 민속문화연구회 : 1975년에 창립되어 민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각을 통해 체계적이며 창조적인 연구활동과 회원간의 인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축제 시 탈춤공연이 있으며 회지 『선』을 발간한다. 하계·동계방학에는 민속학적 연구대상을 답사하며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M.T.를 가져 동아리회원 모두 단합이 잘 되고 있다.

⑪ GIGA HITZ :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으로서 악기없이 사람의 Voice로만 Harmony를 추구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 아카펠라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라. 교양체육분과

① 경당 : 민족무예를 통해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조상의 혼과 기상을 배우고 성실성과 근면함, 민첩성을 길러 자신의 건강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② 산악회 : 1964년에 등록된 역사 깊은 동아리로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재학생 중 산악인이 되기

위하여 등반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회원의 심신을 단련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전한 산악운동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산행은 휴일과 연휴를 이용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부활절휴가와 방학, 연휴를 이용하여 춘계, 하계, 추계 등 장기등반을 하며 1달에 2번씩 일일등반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

③ 코트랑 : 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모임에서 출발하여 테니스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며 회원들의 우의를 두텁게 하고 건전한 운동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행사로써는 춘계테니스대회와 추계테니스대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④ 검도부 : 예를 중시하는 운동으로 검도의 목적은 심신단련, 정신수양, 기술연마, 화랑정신 양양이다. 매일 아침 연습을 통하여 한학기에 한번씩 연무시범을 하고 있다.

⑤ 태권도부 : 본교 학우들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학교분위기를 쇄신함과 동시에 개개인의 심신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둔다.

⑥ 스킨스쿠버(Skin Scuba Diving Club) : Skin Scuba Diving 기술연마와 더불어 체력 단련과 클럽 회원간의 친목 및 나아가 바다 속에서의 생물에 대한 이해와 환경보호, 오염방지를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실제 바다 속의 불가사리 제거로 바다생물 보호에 앞장서며 바다 속의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에 동참하고 있다.

3월 홍보포스터 부착 및 장비전시와 신입생등록, 4월 주 1회 집중적인 DIVING SKILL 및 이론강의, 5월 초 신입생환영회, 장비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5월 신입생 대상 SKIN DIVING 강습 및 재학생 대상 SKIN SCHOOL 실시, 6월 M.T.와 장기원정계획, 2학기엔 수익사업 대신 가을원정을 SKIN DIVING 강습 대신 SCUBA DIVING 강습실시 외엔 1학기과 동일하다.

⑦ REVERSE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최초의 농구동아리로서 학우들의 체력증진과 운동을 통한 정신적 건강과 각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체육시설 복지에 힘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⑧ kick-off : 본교생들의 건강유지 및 체력단련을 주목적으로 하며, 그의 축구경기를 통한 학우들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감 형성을 꾀하기 위해 존립한다. kick-off가 주선하는 운동경기를 통해 학우들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각종 축구대회 참가로 학교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성격으로 존립하는 동아리가 바로 킥오프(kick-off)이다.

마. 종교분과

① 성불회 : 1980년에 창립하여 불교교리 공부와 아울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불교정신에 입각한 지혜와 자비에 의거하여 자기완성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1년간의 주요활동으로는 매주 정기법회 및 교리연구가 있으며 초파일제 행렬과 회지발간 및 초청강연회가 있다.

② JOY :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의 약자로서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둘째로 나를 마지막으로 둘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조이선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캠퍼스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표를 가진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로서, 매주 목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7단계 제자훈련을 통한 조직적인 성경공부, 방학 중 선교사들과 함께 영어성경과 회화를 공부하는 Summer English Class, 캠퍼스 및 민족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능력 있는 영적지도자 준비를 위한 Campus Leader Training,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내용의 수양회가 있으며 이외에는 각종

M.T., '친구초청 전도집회', '체육대회', '등산', '소풍', 선후배와의 만남의 장인 'Home Coming Day'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③ C.A.M. (Christ's Ambassador Mission) :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바탕으로 하여 캠퍼스 내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오순절적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캠퍼스 선교단체이다. 1982년에 정식 등록되어 매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지며 선배 1명과 후배를 맺어 주어 성경공부 및 대학생활에 대한 지도 및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는 양육모임이 있다.

④ I.V.F.(Korea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 지성사회의 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전도(evangelism), 제자도(discipleship), 선교(missions)의 정신을 갖고 있다.

1977년에 발족된 본 I.V.F.는 전국 대학 여름수련회와 Bible&Life Conference, 신년 특강이 있으며 행사로는 매주 정기모임, D.P.M. (아침기도회), Cell의 모임 및 1년에 1~2회에 걸쳐서 캠퍼스 전도를 목적으로 One-to-One-day를 가지며 매학기 회지 『Guide』를 발간하고 있다. 축제시 서적전시, 그 외에 타 Chapter와 연합모임이나 방문의 기회를 가지며 매학기마다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갖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 11, 28).

⑤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R.브라이트 박사에 의해 창설되었다. 한국에서는 1958년 김준곤 박사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현재 서울 정동에 본부를 두고 있다. C.C.C.는 전도, 육성, 파송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으로는 대학별 순모임, 정기모임, 정기전도 모임 등이 있다. 또한 매년 초에 새해를 주님께 드리며 1년 동안의 일을 계획하고 맡기는 원단급식을 하며 심천천막여름 수련회는 전국 대학생들이 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감의 환희로 매년 여름마다 충북 영동군 심천에서 행하여지는 C.C.C.의 큰 행사 중의 하나이다.

⑥ 예수전도단 : 퇴색되어 가는 현대의 물결 속에서 우리들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자 1983년 봄에 창단된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회원들간에 기도와 예배로써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교내활동으로는 매주 캠퍼스 모임과 남을 위한 중보기도시간, 금요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 학기부터는 캠퍼스 내에서 전도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⑦ 가톨릭학생회(소피이바라회) : 성심학원의 창립자인 성녀 마들렌 소피이바라 수녀의 이름을 따라 소피이바라회라 하며 Pax Romana운동에 따라 조직된 서울대교구 대학생연합회에 소속된 단체이다. Pax Romana의 목적은 크리스천으로서의 공동체의식 개발과 성숙한 신앙인, 사회봉사인의 능력함양을 바탕으로 한 인간구원에 있다. 본 회의 조직으로는 전례부, 학술부, 봉사부, 홍보부가 있다. 전례부는 교내외 미사와 전례행사를 주관하고 교리교육과 전례교육을 통해 신앙성숙을 도모한다. 학술부는 회지를 발행하고 성서모임 등 신학적 탐구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의 이론적 성숙을 꾀한다. 봉사부는 정기적 봉사활동, 피정, M.T.를 담당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생활화하고 회원간의 친교와 일치를 꾀한다. 홍보부는 교내외의 홍보를 통하여 연합회와 타교와의 교류를 원활히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바. 시각예술분과

① 연목회 : 연목회는 서예를 통한 정서함양과 인격도야를 도모하며 회원들은 전시회를 통한 연마와 개우침뿐만 아니라 M.T.와 야유회 등을 통하여 친목을 다지고 선배와의 유대를 두텁게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연목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보다 내실을 기하는 성실성이다. 우리의 이러한 자

세가 연목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며 1984년에는 서울지구 연합회에 가입하여 타 대학 서예반과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동아리 발전을 꾀하고 있다.

② S.H.AR.P(Sacred Heart Art Photo) : 취미동아리로 사진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1974년에 발족하여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진의 기능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의 습득과 영상 예술을 통해 자신을 발견함으로 대학생활의 보람과 인격형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기가 찍은 사진을 현상, 인화, 확대까지 직접할 수 있어 한장의 사진을 스스로 완성시킬 수 있다. 본 동아리의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5월 축제에 교내전시회와 9월에 교외 정기전시회를 개최하며 11월에는 학술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4박5일의 원정촬영을 갖는다. 이외에는 매주 야외촬영과 세미나를 하며 회원상호간의 촬영방법과 기술습득에 대하여 의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타 대학 사진반들이 함께 모인 동우회에서는 야외촬영과 전시회를 갖는다.

③ Ani.C.A.T은 가대 유일 만화동아리로서 Animation&Cartoon의 약자이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Ani.C.A.T은 상영회, 전시회, 코스프레, 회지발간 등 만화와 애니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폭넓게 해 나가고 있는 동아리이다.

3 학생상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칙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의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학생
2. 모범이 될 만한 선행 학생
3.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4. 학생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5. 재학 4년간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

제4조(포상의 발의) 학생처장은 제3조의 포상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수회의 또는 학과장회의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및 주임교수 의견서 각 1부

제5조(포상의 결정) 포상은 교수회의 또는 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6조(포상의 기록) 학적과에서는 포상 내용을 수상대장 및 학적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추천서, 기타 증명서 발급시 이를 명기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2. 학생지도상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학생
4.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치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한 학생
5. 학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시킨 학생
6.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7.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8조(징계의 발의) 학생지원처장은 제7조의 징계처분 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수회의 또는 학과장회의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1부
3.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 의견서 1부

제9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해당 학기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근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할 수 있다.

1. 언행이 불량한 학생
2.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
3. 고사 중 경미한 부정 행위를 한 학생
4. 허가 없이 공고물 및 게시물을 비치된 곳에 부착하거나 게시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제11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2.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학생
5. 허가 없이 공고물이나 유인물을 배부한 학생
6. 두 번 이상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2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폭력을 행사한 학생
2. 고의로 교내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학생
3. 고사 중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한 학생
4.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학생
5. 금품 및 물품을 절취 또는 갈취한 학생
6. 학교 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파손시킨 학생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3조(퇴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에 처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을 망각하고 극히 불미한 행동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학생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형이 확정된 학생
3. 재학 중 2회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
4.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학생
5.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4조(징계의 결정) (1) 징계처분의 결정은 교수회의 또는 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2)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이나 참고발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지도)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으면서 일정기간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정지) (1)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가가 금지된다.

(2)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17조(징계의 해제) ((1) 근신 및 유기정학의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해제된다.

(2) 무기정학의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제한다.

제18조(징계의 감면) 학생처장은 징계대상 학생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통보) 학생처장은 포상과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8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 규정) 이 규정 제5조의 포상의 결정은 해당 교정 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장학금

(1) 장학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학과별 배정
3.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심사 및 확정. 단, 교정 부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장학금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사무처장 및 부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선정 위촉하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 ① 간사는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본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장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조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학칙 제11장에 의거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교 성심교정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 및 예산배정을 담당한다.
2.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3. 학생지원처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으며, 지급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교정 부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해당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대상) 본 교 성심교정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신입생 중 입시요강에 의한 장학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가정사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3. 직전 학기 성적 우수자
4. 총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5.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6. 본 교 성심교정 교직원의 직계자녀
7. 보훈 대상자 및 직계자녀
8. 성직자, 수도자로서 소속 원장이나 본당 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9. 기타, 장학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신청 방법) 장학금의 신청은 매 학기말 학생지원처에서 공고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학(부)과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제출하며, 교정 부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학생지원과에서 배부)
2. 보훈 대상자는 보훈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최초 장학금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고시, 외국어우수 장학생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중 복학자에게는 최우수·우수·진리·사랑·복수전공장려·학업장려·근로·신입생근로 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 및 가정사정곤란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지원장학금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복학 및 재입학자
2. 학칙 위반자
3. 근로 평가가 'F' 인자

제9조(추천기준) 각 학(부)과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1. 표1 참조
2. 가계 곤란자

제10조(장학생의 확정) 학생지원처는 각 학부(전공)로부터 선발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하여 성적, 이 중 추천 여부 및 기타 결격 사유를 검토한 후 장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교정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1조(지급시기) 교내 장학금은 매학기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생 확인서를 교부하여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이중 지급 금지) 각종 장학금 지급은 1인 1종류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단, 이중 지급 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1인 2개 장학금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장학금
2. 해외문화탐방장학금
3. 근로장학금 수혜자에 한하여 교내 대여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4. 봉사장학금 수혜자에 한하여 장학생을 지정해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
5. 방학 중 규찰대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6. 군장학금
7.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8. 가족장학금
9. 복지장학금
10. TOEIC/TEPS 성적향상장학금

11. 봉사장학금
12. 공로장학금
13. 사회봉사장학금
14. 우수동아리장학금
15. 효행장학금
16. 도우미장학금

제14조(장학금 지급 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

1. 휴학자(단, 입대휴학은 예외)
2. 체적 및 자퇴자
3. 근로평가가 불량한 자
4.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제15조(장학생 명단 공개) 학생처장은 장학생 명단을 게시판에 공고 한다.

제16조(교내장학생 배정) 교내 장학생은 각 학과별 등록금 총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교정 부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⑥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표 1〉 교내장학금의 종류

장학명	자 격 및 대 상
최 우 수	전공별 전체 학년 수석자로 직전 학기 성적이 4.00이상 이수학점 17학점 이상인자.
우 수	전공별 학년 수석자로 직전 학기 성적이 3.50이상 이수학점 17학점이상인 자.
진 리	진리장학금 신청자중 성적 우수자로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 학기 성적이 3.50 이상, 17학점 이상인 자.)
사 랑	진리장학금 신청자중 탈락자로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직전 학기 성적이 3.50이상, 17학점 이상인 자)
성 적 향 상	향상 직전 학기 성적이 1.75이상, 15학점 이상자중 평점평균이 1.0 이상 향상자로 전공 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복수전공장려	복수전공 이수자중 성적 우수자로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 학기 성적이 3.50이상, 17학점 이상인 자.)

장학명	자 격 및 대 상
학 업 장 려	야간 학부에 재학 중인 취업자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로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 학기 성적이 3.0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고 시	*5급 이상의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의 최종 합격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5급 이상의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의 1차 합격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외국어성적우수	*TOEIC 성적 900점, TEPS 성적 850점이상 또는 TOEFL 성적 250점 이상자. *불어권 DELF A5이상, 중국어권 HSK 8급이상, 일어권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이상 통과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TOEIC/TEPS 성적향상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TOEIC/TEPS 성적 향상 자. 600점~900점/550점~850점 학생 중 50점 이상 향상 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교 직 원 자 녀	교직원 직계자녀 또는 정년퇴임한 직계자녀(직전 학기 성적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가 족	본 대학교에 직계 가족이 2명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 (저학년 소속 교정에서 지급하며, 저학년의 기준은 학년, 생년월일 순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성 심 추 천	성적자 또는 소속 수도회장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효 행	공공기관으로부터 효행자로 시상된 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소년소녀가장	해당 관청에 등록된 소년 소녀 가장으로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직전 학기 성적이 3.50이상, 17학점 이상인 자.)
봉 사	총학생회 임원 또는 교내 자치기구 임원으로서 봉사의 공로가 있는 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 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사 회 봉 사	사회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로 해당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우 수 동 아 리	각 분과별로 우수동아리 대표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인 턴 십	인턴십장학금 신청자중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도 우 미	교내·외 학교 홍보 활동을 하는 도우미(가홍이, OBF, 웹진, 국제교류과)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보 훈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중 국가보조금 지급대상 자.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공 로	교외행사 또는 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떨친 자(전국대회규모이상)
외 국 인	특례입학 한 외국인 또는 재외교포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학 술 연 구	주제별 2명이상 그룹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연구주제별 연구논문 및 발표를 통하여 전공 교수의 최종 선발된 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 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해외문화탐방	탐방계획서 및 외국어능력 등을 근거로 선발된 자중 해외 탐방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및 우수 탐방 팀으로 시상된 자. (직전 학기 성적이 2.50이상, 15학점 이상인 자.)
특 별 지 원	교무위원회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 2〉 교외장학금의 종류

· 재단법인 성심장학회 장학금	· 아산문화재단장학회	· 기쁜 장학금
· 형애장학회 장학금	· 성심동창회 장학금	· 성남장학회 장학금
· 불어불문학과동문회 장학금	· 한국지도자육성재단장학회	· 이문근신부기념 장학금
· 경우장학회 장학금	· 바오로장학회 장학금	·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금
· 쟈마 장학금	·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 송천장학재단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장학금	· 오성상운주식회사 장학금	· 정수장학회 장학금
· 인천광역시 남구청 통장자녀 장학금	· 인송문화재단 장학금	· 사보이장학회 장학금
· 연강재단 장학금	· 함흥시장학회 장학금	· 동철문화재단 장학금
· 해성문화재단 장학금	· 흥원문화재단 장학금	· 삼보장학회 장학금
· 양영회 장학금	· 과천시애향장학회 장학금	· 덕평장학재단 장학금
· 북청군장학회 장학금	· 인천백오보훈장학회 장학금	· 보훈 장학금
· 전북애향장학회 장학금	· 이수교장학재단 장학금	· 유당장학회 장학금
· 공군조종 장학금	· 수안군장학회 장학금	· 해군 장학금
· 정현재단 장학금	· 한국로터리장학문화재단 장학금	

(3) 기부장학금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기부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기부) 장학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학금 기부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기부금의 채납) 총장은 장학금 기부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기부금으로 채납한다.

제4조(기부금의 관리) 기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사무처장이 담당한다.

제5조(특정장학금의 설치) 기부자가 장학금의 지급 조건을 특별히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특정 장학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는 학생지원처장이 담당한다.
2. 장학금 지급액은 기부금액 및 이자 수익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학생병사안내

(1) 재학생 입영연기

가. 내용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나. 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 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다.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4 학기제	5,6 학기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8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6세

라.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마.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바. 징병검사, 입영원 출원과 같은 기타 병무관련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참조.



1 학생준칙

가톨릭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본 대학교의 이념에 따라 학생들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며 건전한 신체를 단련함으로써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준칙을 둔다.

제 1 장 학생기록부와 학생증

- 제1조 학생은 입학등록 완료 후 성의교정 홈페이지의 학부정보시스템에서 학생기록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 제2조 학생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변경을 하여야 한다.
- 제3조 학생은 입학등록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제5조 학생은 본 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학생증을 항상 좌측 책상 위에 놓아야 한다.
- 제6조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제7조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강남성모병원 우리은행출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구(舊)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학생지원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 2 장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 제8조 학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부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 결사시에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단체 결사시 지도교수를 두되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 집회는 단체 결사가 승인된 단체에 한한다.
- 제11조 교내에서 광고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부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 제12조 승인을 받은 모든 자치단체(서클)는 2학기에 그 활동계획서 및 전 학기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부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학생은 정당이나 정치성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학외 행사 참가

- 제14조 학외에서 주최되는 행사에 학생이 참가할 때에는 승인된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학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학생징계

제15조(학업성적으로 인한 징계) ①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는 학칙 제41, 42조에 의거 재학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말 성적이 당해 학기에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의 3분의 2 미만인 자 또는 매학기말 E급(59점) 점수를 1과목이라도 취득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 학사경고를 계속 3회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이 되며 유급된 자는 실제 졸업하는 학년도 졸업정원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유급은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며, 의예과는 두 번째, 의학과 및 간호학과 세 번째 유급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년말 성적평가 결과 총 평균이 70점 이하거나 1과목이라도 E급 평점을 얻은 자.

2. 학칙 제38조에 의한 매학기 각 과목별로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자.

제16조(부정행위로 인한 징계) 학칙 제40조에 의거 학점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1개월 이상 무기정학)하며 해당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을 통하여 득점할 수 없다.

제17조(무단 장기결석자의 처벌) 학칙 제37조에 의거 해당 학기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학칙 제28조에 의거 제적되는 수도 있다.

제18조(미등록에 대한 처벌)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되는 수가 있다.

제19조(성행이 불량한 자에 대한 처벌) : 교내외에 폭행을 자행함으로써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는 학칙 제71조에 의거 퇴학 또는 기타 처벌을 받는다.

제 5 장 휴학,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중 납입금

제20조 휴학은 일반휴학, 입대휴학으로 구분되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입대휴학은 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21조(일반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 제21조에 의거 소정 휴학원을 제출하여(교의 진단서 첨부) 휴학할 수 있다(※ 가사로 인한 휴학은 학년초 등록기간에 한한다).

단, 미제출자는 제적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학칙 제49조에 의거 휴학한 자는 다음 학기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한다 함은 학칙 제23조(입대휴학)에 의한 휴학자는 다음 학기 이후의 전 휴학기간 중 납입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다.

제22조(입대휴학) ① 학기 도중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병무청장)를 첨부하여 학칙 제23조에 의거 소정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제적된다.

② 입대휴학자는 학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으로 인정되므로 납입금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학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년초 30일을 초과하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3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학칙 제24조에 의거 소정 복학원에 건강진단서(질병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제대 복학자는 전역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1) 군제대로 인한 복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2) 일반 휴학자가 기간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는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학자는 학칙 제49조에 의거 당해 학기부터 납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재입학) ① 퇴학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학칙 제19조에 의거 퇴학 후 2년을 경과치 않은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학칙 제19조와 제17조, 제16조에 의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는 당해 학과 신입생과 동일한 납입금을 1년간 납부해야 한다.

제25조(복적) 학칙 제28조에 의거 제적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6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25조에 의거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학칙 제26조).

제27조 제5장에 의한 학적변동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등록금을 반환 또는 대치하지 않는다.

제 6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28조 학적부의 기재사항이 호적부상과 틀릴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호적등(초)본 1통을 첨부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추가시험·재시험

제29조(추가시험) 학칙 제39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있는 바 소정원서에 사유서를 첨부(질병시에는 교의의 건강진단서 첨부)하고 학년 지도교수를 경유한 후 사유발생 3일 이내에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학년말 성적이 D급일 때는 부총장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으나 학년말의 재시험은 당해 학년에서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의 1/3 이내에 한하여 재시험 자격을 준다.

제 8 장 학생생활 지도

제31조(교목실) 본 대학교 성의교정의 교목신부 밑에 교목실을 두고 이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학생의 건강상담) 본 대학교 성의교정에 교의를 두고 학생의 건강상담에 응하며 의료 보험 혜택 또는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는다.

제33조(학생기록부 입력) 학칙 제14조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입학등록 완료 후 성의교정 홈페이지의 학부정보시스템에서 학생기록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4조(지도교수) 각 학년에 지도교수를 두고 학생의 지도를 담당한다.

제35조(장학금관리)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 관리는 학생지원팀에서 취급하며, 이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① 교내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 함은 본 대학교 성의교정의 교직원, 동창생, 학생 또는 외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말하며 인쇄물 게시, 시위,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 및 학생기의 사용 등 높은 소리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생지원팀에 비치된 집회행사 승인신청서를 기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회하여야 한다).

② 시위,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의 책임자는 집회 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집회가 끝난 후 즉시 부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위의 계획서 제출 및 보고는 문서로 학생지원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7조 교내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를 게시코자 할 때에는 게시원(소정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게시기간은 1주일로 한다.

제38조 게시용지 규격은 25cm×45cm(신문지 1면)의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부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9조 외부기관 또는 개인이 광고, 게시, 인쇄물 배포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동아리 등록은 소정등록신청서 1부, 지도교수추천서 1부, 회칙 1부, 활동실적보고서 1부, 당해년도 활동계획서 1부, 회원명부 1부를 제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일체의 행사를 금한다.

제41조 본 준칙을 위반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다.

부 칙

1. 본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교학위원회, 주임교수, 교수회의 의결에 따른다.
2. 학생준칙 시행세칙

2 학생준칙 시행세칙

제 1 장 학생기록부, 학생증

제1조 학생기록부는 입학 시에 1부 출력하여 영구보존 한다.

제2조 학생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학생증 재발행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2 장 단체, 게시, 인쇄물 배포

제4조 ① 본 교정에서의 단체의 범위는 학칙 제91조 단체에 한하며 그 구성요원은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본 대학교 성의교정 학생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집회(행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회 예정 3일 전까지 지도교수 경유 부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대관이 허락되는 강당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실 및 강의실(이하 “강당” 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의 행위가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학교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이를 금지 또는 취소한다.

3 장학금

(1)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이하 “성의교정”을 칭함)의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 사무취급에 관하여는 별정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본 규정에서 별정의 규정이라 함은 장학금 지급단체에서의 특정한 지급조건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본 교정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극히 곤란한 자
4.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5. 동문회, 공공기관 또는 외부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자
6.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7. 교내 특정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로봉사한 자
8. 기타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지급액) ①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부총장이 정한다.

②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단, 본 규정의 개정사항 중 학외장학금의 신설 또는 지급중단으로 인한 변동사유 발생시는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가감 관리한다.

제5조(심의기구 및 기능) ① 성의교정의 장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한다.

② 성의교정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학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련 사항

제6조(선정순위) 장학금 선정순위는 별정의 규정이 없는 한 신청자 중에서 학내장학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도교수회의 추천의뢰를 거쳐 성의교정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성적) 신입생은 입학시험 성적, 재학생은 전학년도의 성적을 말하며, 성적표 발행은 관례에 따라 교부한다.

제8조(신청)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
2. 전학년도 성적증명서(단, 제3조 제3항 대상자는 제외)
3.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
4. 기타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9조(적격여부조사) 교학과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자료를 성의교

정장학위원회 심의에 회부한다.

제10조(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적 우수 장학금은 1년간 지급한다.

제11조(지급방법) 각종 장학금은 납입금 등록시 등록대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정의 규정에 따라 기 등록을 필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부장학금 관리) ① 외부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대상 학생을 지정하여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학재단에서 지정한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외부 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대상학생을 지정하지 않고 추천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추천조건에 따라 당해 학년 지도교수에게 의뢰, 추천을 받아 부총장이 결정한다.

③ 외부장학금은 일단 경리과에 입금조치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지급하도록 한다.

제13조(신청제한 및 지급중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 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단,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없다.

2.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아니한 자

3. 휴학, 복학 또는 재입학자

4. 학업성적이 장학생 선발기준에 미달된 자

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14조(이중지급 금지) 각종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종목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회수) 장학금 지급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장학금을 회수한다.

1.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된 자

제16조(취급) 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의 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취급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의교정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며 발효와 동시에 이전의 장학생 선발세칙은 폐기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199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성의교정 장학금 지급규정으로 개칭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학금의 종류

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비 고
학 내 장 학 금	성적우수장학금	각 대학 학과, 학년에서 전 학년도 성적이 일정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등록금전액 등록금일부
	봉사장학금	학생회 활동이나 학내 특수한 부서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 또는 성의 주간교수와 학생(교학)부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일반(무상)장학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지도교수와 학생(교학)부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 단,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전액 (반액은국가보조)
	근로장학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이 교학부처장의 추천을 받아 특정한 곳에서 근로한 자	등록금일부
	부속병원장학금	신입생 중 각 대학 학과 입학성적 상위자	등록금전액 등록금일부
	교직원자녀장학금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정규교직원 자녀	등록금전액
	학술연구장학금	전국 학술연구발표대회 입상 또는 학내학술발표대회 최우수자(팀)	등록금 일부
동 문 장 학 금	의과대학동창회 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흰나리장학금 (간호대학동창회)	간호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박인태-정금자 동문장학금	성의 기자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주간교수의 추천을 통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최선자장학금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3,4학년 중 간호대학 교수회의 추천을 통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월악회장학금	산악반에 가입된 학생으로서 산악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의학과기별 동문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으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음태인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으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나 경제적인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지도교수와 학생부처장의 추천을 통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장준환동문장학금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과 영동고 졸업생, APC동아리 학생중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자	등록금일부

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비 고
동 문 장 학 금	이계실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으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나 경제적인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지도교수와 학생부처장의 추천을 통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이선량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으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나 경제적인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지도교수와 학생부처장의 추천을 통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장학금 회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백송(한광수)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이전 학년까지 대·내외적으로 학생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학생회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생부처장이 심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등록금반액
국가 공공 장학금	보훈(학외)장학금	보훈처에서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등록금 반액
	군위탁장학금	졸업 후 군장기 복무장교를 희망하는 학생 중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등록금반액 등록금전액
학 외 장 학 금	CMC 실험장학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중 부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일범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으로서 조직학 학년말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을 해부학교실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송약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으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나 경제적인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중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자	등록금일부
	향설서석조박사장학금	전학년 성적이 3.0이상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록금전액
	운경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장래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중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	등록금전액
	익명장학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경제적인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록금일부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	등록금전액
	생화학상 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1년 재학생으로서 생화학 과목성적 최우수학생에게 생화학교실에서 지급	등록금일부
	화이자사랑의장학금	실직가정의 의과대학생이며, 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 중 학교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	등록금전액

구분	장학금명	선발기준	비 고
학 외 장 학 금	양영재단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재단 심사위원회 심사에 합격한 자	등록금전액
	거봉장학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	
	주상용외과장학금	의학과 4학년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중 외과를 지방하는 학생을 외과학 주임교수의 재청으로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등록금일부
	안로사봉사장학금	의대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중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등록금일부
	율리아장학금	의대 재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생 학술연구에 적극적이며 대외적으로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록금일부
	유한재단장학금	학업성적(또는 입학성적) 순위가 해당학과 동학년 정원의 20%범위내의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록금전액
	류덕희장학금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으로 지도교수와 학생부처장이 추천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등록금반액
	송천재단장학금	의과대학 의학과 3,4학년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 재단장학회 심사에 합격한 자	200만원
	창강재단장학금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전액

4 학생병사안내

I. 재학생 입영연기

가. 입영연기 대상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한연령(의과대학 27세) 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나. 입영연기 제한

- ① 퇴학, 제적된 자
- ②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③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 연기절차

- ①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②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진일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장에 입영연기신청서를 출원하면 연기 처리

II. 학적변동자

입영연기 중인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를 하며,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 충원 계획에 따라 입영시키게 된다.

가. 제적, 퇴학된 자

나.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자

다. 복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자 : 학적변동으로 통보된 자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학하거나 다른 학교에 편입학하여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통보에 의거 다시 재학 입영연기 처리(입영하였다가 귀향한 자도 같음) 된다.

III. 입영(소집)원 출원

가. 대학 재학 중 군 입영(소집)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하여야 된다.

현재 재학생으로서 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휴학을 하지 아니하고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하여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 입영하면 입영 대기기간이 단축된다.

- ① 출원기간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

기에 입영이 가능함.

- ②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사이버민원실 - 재학생입영신청에서 인터넷출원,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 ③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서류 바로가기 -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나.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자 처리

입영원 출원자는 본인의 희망시기에 입영 조치하되, 입영 희망시기가 출원일로부터 너무 빠르면 군입영 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영 희망시기

입영 희망시기는 입영(소집)원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희망시기를 정하도록 하며,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단, 19세인 자는 입영 희망시기를 다음과 같이 별도 관리한다.

- ※ 10월 31일까지 출원자 : 당해년도 일반자원과 같이 처리하되 입영(소집)원 출원시 입영 희망시기를 다시 반영
- ※ 그 이후 출원자 : 별도 입영(소집)원 출원자로 처리

Ⅳ. 입영일자의 연기절차

가. 출원대상

재학생 입영 신청을 한 후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자 제외)

사유별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대학 편입학 • 폐교(과) • 유학 • 학군무관후보생 지원 • 장학생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병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및 주민등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친권자의 사실 확인서 • 기타 필요한 증명서

나. 출원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사이버민원실 - 재학생입영신청서(취소, 변경)에서 인터넷출원,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V. 병역처분변경원

병역처분변경원(구.특수전면역원)은 입영이 결정되어 영장이 나오려는 상태에서 특수한 사정(사고,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재학 중에는 제출불가)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주소지 시, 구, 군,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첨부서류 : 병사용진단서)

VI.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가. 의무사관후보생(병역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 및 병역법 제34조)

1) 지원자격

가)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중 의·치·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인턴(기초교실포함)으로 채용된 사람중 33세가 되는 해 2월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2005년도 기준 의과 : 77년 이후 출생자)

2) 지원절차

수련기관별로 취합하여 매년 2월경에 병무청장에게 제출

3) 구비서류

가) 해당년도 의무사관후보생(인턴)지원자 명단

나)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5번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

다)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부.(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27번 신원진술서)

4) 병적편입 통보

가) 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수련기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나) 수련기관의 장은 선발결과를 본인에게 통지

5) 입영 신체검사

가) 입영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며 병명과 질병상태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한 귀가자 명부 등을 지방병무청장에 보고

나)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 치유 기간 필요시 귀가 조치됨.

나. 공중보건과의사 지원절차

가. 공중보건과의사(병역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 및 병역법 제34조)

1) 지원자격

가) 의·치·한의사 자격을 가진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소집대상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

2) 지원절차

국시 발표일로부터 매년 2월 10일까지 출신학교장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3) 구비서류

가) 해당년도 공중보건기사 지원자 명단

나)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4번 공중보건기사 지원서)

다) 공중보건기사 지원자는 신원진술서 작성 불필요.

4) 복무기간

공중보건기사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종사해야 하며,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5) 벌칙

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형사처벌후 잔여기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나)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이탈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 연장 근무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처리절차 안내

(뒤쪽)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input type="checkbox"/> 현역 대체복무 지원서 (병역법 제58조, 제59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표는 V로 표시 • 신청일자, 본인성명,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사관후보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진술서 1부 • 법무사관후보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원진술서 1부 •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공중보건 의사·정병전담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단, 일반전공의 수련자가 공중보건 의사 지원시 수련이수증명 첨부 • 공익법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제출(경유)기관	처리기관 병무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px; margin: 0 auto;">신청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 해당기관 • 수련기관의장 • 사법연수원장 • 국회사무처장 • 법원행정처장 • 행정자치부장관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출신(재학)대학의장 (공중보건 의사)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px; margin: 0 auto;">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px; margin: 0 auto;">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px; margin: 0 auto;">결과 통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px; margin: 0 auto;">결과 통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80px; margin: 0 auto;">결 재</div>

신 원 진 술 서(A)

1. 인적사항

※ 연번: 작성자가 기재하지 않음

						연번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사 진	
	한 자			-					
계 급		군번		소속		입대일자			
원 적				호 주	관계()				
본 적				호 주	관계()				
주 소				세대주	관계()		전화		
친권자	주 소			성 명	관계()		전화		
재 산	본 인	동산: 원,	부동산: 원	친권자	동산: 원,	부동산: 원			
신 장	체 중	혈액형	특 기	취 미	종 교	공인된 자격			
cm	kg	A, B, AB, O							

2. 학력 및 경력

※ 기타란: 상훈관계 기재

구 분	기간(년월)	학 교 명	전공학과	졸업학위	기 타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대 학 교	~				
대 학 원	~				

구 분	기간(년월)	직장명(부대)	직 책	직급(계급)	기 타
경 력	~				
	~				
병 력	~				

210mm×297mm(중질지 60g/㎡)

(뒷면)

3. 사회(학교)활동

단체명		가입일자		탈퇴일자	
직책		가입동기		탈퇴이유	

4. 가족사항

※ 본 항은 북한거주 이산가족 및 해외거주자도 포함 기재

	관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교명	종교	직장 및 직위	거주지(군이상)
가족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친족 (3촌 이내)							
처가 (정인/장모)							

위 기재 사실중 부정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5 의료복지제도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의를 두고 건강상담을 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과 학생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지정된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의료 복지 제도가 있다.

교의 : 강남성모병원 내과 승기배 교수

(1) 정기 신체검사

- ① 대상 : 신입생을 제외한 전 학년
- ② 시기 : 매년초 소정기간 중에 실시
- ③ 장소 : 강남성모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 ④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비 고
기 본 검 사	신장, 체중, 시력, 혈압	
흉 부 X 선 검 사	간접촬영	
검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력검사 •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혈액소, 혈청GOT, GPT) <div style="text-align: center;">┌───┐ 공복시 검사</div> • 간염검사 	※ 간염검사는 혈청 GOT, GPT 검사 후 필요시에 실시함.

(2) 진료비 감면혜택

- ① 지정 병원 : 가톨릭대학교 8개 부속병원
- ② 이용절차 : 해당과에 초진일 경우 제1, 2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학생증과 같이 수납창구에 제시해야만 진료비할인 혜택을 받는다.
- ③ 혜택 : 학생들은 다음 표와 같이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 험 환 자	일 반 환 자
• 초진료, 재진료 100%	• 초진료, 재진료 100%
• 급여 항목 30%	• 비급여 항목 30%(진료 목적일 경우)

(3) 재학생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

※ 담보위험

① 학내·외 치료비 추가특별약관(보상한도액 : 1사고당/2백만원)

우리 대학교 학생이 학교 활동 중 학교 내외(국내만 해당)에서 입은 신체장애에 대하여 학교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의 사고에 대하여 그 치료비에 한해 보상하는 보험

② 신입생 담보 : 입학전인 신입생들의 학교 행사 중 사고에 대해 치료비 보상

